



제2017-038720-01호

안전인증서

R. STAHL Schaltgeräte GmbH

Schaltgerate GmbH, Nordstraße 10, 99427 Weimar, Germany

위 사업장에서 제조하는 아래의 품목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4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 심사 결과 안전·보건기준에 적합하므로 안전인증표시의 사용을 인증합니다.

품 목

Tubular light fitting

형식·모델(용량·등급) / 인증번호

6036/1212-***-***-***(Ex d IIC T6/T4) / 17-KA4BO-0450

인 증 기 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54호

인 증 조 건

1. 제조공장

·본 인증서는 'Schaltgerate GmbH, Nordstraße 10, 99427 Weimar, Germany'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한함.

2. 제품개요

·당 기기는 1종, 2종지역에서 사용하는 등기구임.

·정격: 아래표 참조

·사용주위온도: 아래표 참조

정격	6036/1212-***-***-***				
	12 Vdc	(24~48) Vac/Vdc		(110~240) Vac/Vdc	
온도등급	T4	T6	T4	T6	T4
최대주위온도	+40 ℃	+40 ℃	+70 ℃	+40 ℃	+70 ℃
최소주위온도	-60 ℃/ -55 ℃				

3. 인증범위:

본 인증서는 아래의 형식번호에 한하여 유효함.

·6036/1212-(aaa)-(bbbb)-(cc)

-(aaa), (bbbb), (cc): 추가 옵션

4. 안전한 사용을 위한 조건:

없음.

5. 인증(변경)사항:

없음.

6. 그 밖의 사항

·안전인증품의 품질관리, 확인심사 수검, 변경사항 신고 등 인증 받은 자의 의무 준수

· $T_a = -60 \text{ }^\circ\text{C}$ 의 경우에는 배치 정적 압력 시험(48.3 bar)을 수행하여야 함.

·본 안전인증서는 반드시 관련 IECEx 인증서(IECEx EPS 13.0027 issue No.2)와 함께 사용

2017년 7월 28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안전인증을 받은 자의 유의사항 [Notification for recipient (certification holder)]

1. 본 인증서는 기재된 사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으로서 적용된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valid only when the product is suitable for the applied safety certification criteria and is manufactured from the manufacturing location that is stipulated on this certificate)
2.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정지 및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If a person who has received safety certification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clause, this safety certification may be suspended or cancelled)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In case of being certified in false or other improper ways)
 - 2)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될 경우 (In the case that the properties of the product for which safety certification has been received are not suitable for the safety certification criteria)
 - 3) 정당한 사유 없이 확인심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In case of refusing, avoiding or disturbing regular surveillance audit without a justifiable reason)
3.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안전인증기관에 안전인증 변경 신청을 하여 안전인증서를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In the case of the following subclauses, the revision of the safety certification shall be applied to the safety certification body and the safety certificate shall be reissued)
 - 1) 인증서의 분실 또는 훼손 (Losses or damages to this certificate)
 - 2) 제조자, 주소, 인증조건 등 인증서 기재사항의 변경 (Changes of stated items in the certificate such as manufacturer's name, manufacturer's address, certification conditions, etc)
4.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The recipient of safety certificate (certification holder) shall comply with the following subclauses)
 - 1) 안전인증표시 등 인증요건의 유지관리 (Maintenance control of the certification requirements such as a safety certification mark)
 - 2) 안전인증을 받기 이전 또는 정지, 취소된 이후 생산된 제품에 안전인증표시를 하면 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됩니다. (It will be punished by the ACT if the safety certification mark is used before issue of the safety certification or after suspension or cancellation of the safety certification)
5.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의5에 따라 정기적인 확인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The recipient of the safety certification (certification holder) shall receive a regular surveillance audit under Paragraph 5 of Article 34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Article 58-5 of ENFORCEMENT ORDINANCE in the same ACT)